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102

발의연월일: 2022. 8. 31.

발 의 자:윤준병·김정호·김철민

김성환 · 양정숙 · 안규백

오영환 · 이상헌 · 신정훈

이용선 · 민형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% 감면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·재산세 50% 감면은 농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저 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바,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 황임.

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·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 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,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·재산세 50% 감면 등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 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

제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 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 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 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| 제2조 제7호부 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 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, 과 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

제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
대한 감면) ①

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<u>2</u>	<u>2</u>
<u>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경감한다.	027년 12월 31일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